

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

의 안 번 호	6
--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00. 4. 18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('99. 8. 31)에 따라 감사청구의 유효요건인 감사청구 주민수를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■의 사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■관내 거주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300분의 1이상으로 함(안 제2조)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3조의4

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,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사하구 관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주민총수의 30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